성주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일자 : 2015년 12월 일
제 출 자 : 성 주 군 수

1. 개정이유

○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에 관련 조항을 우리군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반영하여 장애인복지행정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○ 위탁운영 관한 사항(안 제7조)
○ 위원회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○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○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)
○ 위원회에 임기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○ 위원장의 직무 등에 관한 사항(안 제12조)
○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항(안 제13조)
○ 위원회 수당에 관한 사항(안 제14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복지법」 및 「장애인복지법 시행령」
나. 예산조치 : 5,600천원정도
다.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
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마. 입법예고 : 의견없음.(2015. 10. 22 ~ 2015. 11. 11)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를 제15조로 하고, 제7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 (위탁운영) ① 군수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·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.

제8조 (위원회) 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증진과 정책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9조 (기능) 위원회는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·조사·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.

제10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되,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.

1.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
2.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
3.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성주군 소속 공무원
4.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업무담당주사가 되고,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제11조 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.

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,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.

제12조 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3조 (회의)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4조 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신 설>	제7조(위탁운영) ① 군수는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.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증진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·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.
제7조 (생 략)	제15조 (현행 제7조와 같음)
<신 설>	제8조(위원회) 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증진과 정책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<신 설>	제9조(기능) 위원회는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・조사・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.
<신 설>	제10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되,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. 1.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.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.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성주군 소속 공무원 4.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업무담당주사가 되고,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.

<신 설>	제11조(임기)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.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,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.
<신 설>	제12조(위원장의 직무 등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<신 설>	제13조(회의)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<신 설>	제14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